

---

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#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(8편)

---

2022. 3. 10.

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
산재예방지원과



#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요

※ 8판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**파란색**으로 표시

구분	종전(7판)	개정(8판)					
1.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	<p>■ 직무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대상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자*</li> <li>*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② 안전관리자, ③ 보건관리자, ④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⑤ 안전관리전문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,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, 안전검사기관, 자율안전검사기관, 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</li> <li>- (이수기간 유예) ① '20.2.4.~'21.6.9. 신규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'22.6.9.까지' 이수해야 함 ② '21.6.10. 이후' 선임되거나 채용된 자 또는 보수교육 대상자는 '22.6.30.까지' 이수해야 함</li> </ul> <p>■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근로자) 방역수칙 준수하여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</li> <li>- (관리감독자) '20.9.8. 이후'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' 이수해야 함</li> </ul> <p>■ 기타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노동(지)청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점검 시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6.30.까지' 유예</li> <li>-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요청</li> <li>-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</li> <li>- '실시간 화상교육·모바일교육' '22.6.30.까지' 한시적 허용(p5~6 참고)</li> </ul>						
	<p>■ 인원기준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50인 미만(종전 100인 미만)</th> <th>50~299인 미만(종전 100~499인 미만)</th> <th>300인 이상(종전 500인 이상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촉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종완료자 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</li> </ul> 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칙적 금지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■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유증상자) 방역당국에 연락 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</li> <li>- (확진환자) 방역당국의 역학조사, 사업장 소독 등 조치에 적극 협조·이행</li> <li>- (교육생 출결관리)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</li> </ul>	50인 미만(종전 100인 미만)	50~299인 미만(종전 100~499인 미만)	300인 이상(종전 500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촉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종완료자 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칙적 금지</li> </ul>
50인 미만(종전 100인 미만)	50~299인 미만(종전 100~499인 미만)	300인 이상(종전 500인 이상)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촉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접종완료자 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원칙적 금지</li> </ul>					
2. 교육시 방역 관리 방안 (인원기준 등)  * 8판에서 변경된 내용							
3. 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	<p>■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</p> <p>■ (심층 인터뷰 등) 교육 이수 근로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</p>						
4. 시행시기		■ '22.3.10.부터'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					

## ‘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8판)’ 개정 내용

### □ 인원 기준(8p)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(안전보건교육)을 대면(집체 또는 현장교육)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\*

\* 300인 이상: 원칙적 금지(다만,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육 실시 가능)

### □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관리방안(9p)

- **(유증상자)** 교육 중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교육생(유증상자)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의 장소에 유증상자를 격리하고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

\* 다만, **고위험군**(PCR검사 우선순위 대상)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

↳ ①역학적 연관자(밀접접촉자, 격리해제 전 검사자, 해외 입국자), ②의사소견서 보유자, ③60세 이상자,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, ④고위험시설(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) 종사자

- 검사 결과,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, 음성이라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

- **(확진환자)**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**확진환자 발생** 시 교육기관은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 등에게 알리고 접촉자\*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공지

\* ①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, ②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, ③동일 공간에서 교육하는 구성원으로 접촉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**(교육생 출결 관리)**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**확진환자**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**격리기간** 등에 대해서는 **출석**(교육 수강)으로 인정

-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)

-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나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잔여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PCR검사 결과 대기기간은 출석으로 인정)

# 1

##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

### □ 직무교육

- (이수기간 유예)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\*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\* '21.6.10. 이후 ①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(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)

- 다만,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,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\*이 '22.6.30.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

\* 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)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
↳ 예시) '22.6.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'22.9.1.

### 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(근로자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

- (관리감독자) 사업주가 관리감독자\*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

\* '21.6.10.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

-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,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'22.6.30.까지 유예(과태료 면제)

### □ 기타 사항

- (실시간 화상교육\*) 사업주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 
(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'22.6.30.까지 한시적으로 가능)

※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

\* '실시간 화상교육'이란 PC,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·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서, 강사·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
- (모바일교육\*) 사업주가 근로자·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 「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)」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, ②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\*\*를 하는 경우, '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(모바일교육)' 가능 (6관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'22.6.30.까지 한시적으로 가능')

※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,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

\* '모바일교육'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,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
\*\*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

- ① 모바일교육 수강 시 '작업 중 수강금지', '운전 중 수강금지' 내용 공지할 것
- ②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
- ③ 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,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
- ④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-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6.30.까지 유예
- (교육일정 조정)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
- (평가지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
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

구분	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근로자	일반	▶ 8시간	▶ (일반) 분기별 6시간 ▶ 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▶ 2시간	▶ (일반) 16시간 ▶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	일용	▶ (일반) 1시간 ▶ (건설업) 4시간	-	▶ 1시간	▶ (일반) 2시간 ▶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▶ 연 16시간	-	-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▶ 6시간 이상	▶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▶ 34시간 이상	▶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▶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	일반	▶ 2시간	-	-	▶ 16시간
	단기·간헐	▶ 1시간	-	-	▶ 2시간

## □ 공통사항

## ○ 인원 기준

-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(안전보건교육)을 대면(집체 또는 현장교육)으로 실시하는 경우 299명까지는 집중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 가능\*

\* 300인 이상: 원칙적 금지(다만, 좌석이 있는 경우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4m<sup>2</sup>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한다면 교육 실시 가능)

- 사업주는 근로자·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 실시

-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

- 교육장, 공용물품,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이상) 및 환기(일 3회 이상)

-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

-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(붙임1)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

-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 「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\*을 준수

\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출입자명부 작성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,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, 음식섭취 자제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

-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,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(붙임2)\* 안내

\*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 
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

-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

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(붙임3)에 따라 신속히 조치

## 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(사전안내)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(붙임4)
- (유증상자) 교육 중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교육생(유증상자)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실 등의 장소에 유증상자를 격리하고 해당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
  - \* 다만, 고위험군(PCR검사 우선순위 대상)의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
    - ↳ ①역학적 연관자(밀접접촉자, 격리해제 전 검사자, 해외 입국자), ②의사소견서 보유자, ③60세 이상자,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, ④고위험시설(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) 종사자
  - 검사 결과, 양성이라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, 음성이라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
- (확진환자)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**확진환자 발생** 시 교육기관은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 등에게 알리고 접촉자\*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공지
  - \* ①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, ②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, ③동일 공간에서 교육하는 구성원으로 접촉 빈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- (교육생 출결 관리)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**확진환자**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**격리기간** 등에 대해서는 **출석**(교육 수강)으로 인정
  -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)
  -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양성이나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잔여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PCR검사 결과 대기기간은 출석으로 인정)

### 3

## 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

-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
- 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(대피요령 등)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\*
  - \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  - 심층 인터뷰\*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,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\*\* → 과태료 부과
    - \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    - \*\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### 4

## 시행시기

- (시행시기) '22. 3. 10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

**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**

- **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**
  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  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**경계·심각**” 단계에서 **행정명령권자**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**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**
  - (과태료 부과) **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**  
    -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**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**
  - (과태료 금액) **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**
- **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**
  - (착용 의무) **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**  
    - 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  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**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**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- **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**
  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**의약외품**’ 으로 허가 받은 **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**, 그 외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가능  
    - \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  - (착용법) 마스크는 **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**  
    - 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- **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**

<b>예외 대상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li> <li>·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 <li>·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</li> </ul>
<b>예외 상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</li> </ul> </li> <li>·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</li> <li>·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</li> <li>·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</li> <li>·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 <li>·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 <li>·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li> <li>·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li> <li>·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</li> <li>·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li> <li>·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</li> <li>·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</li> <li>·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 </ul>

**코로나19 의심환자\* 발생 시 행동 요령(예시)**

\* 발열(37.5°C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
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(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, 방문자 등)가  
확인된 경우



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**마스크를 착용**시키고 다른 사람과 **격리 조치**(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)



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**개인위생 관리**(마스크 착용 등) 및 **상호접촉 자제**



**의심환자 격리, 사업장 소독 등 적극 이행**  
① **의심환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실시**

검사 결과: 음성인 경우

검사 결과: **양성(확진)인**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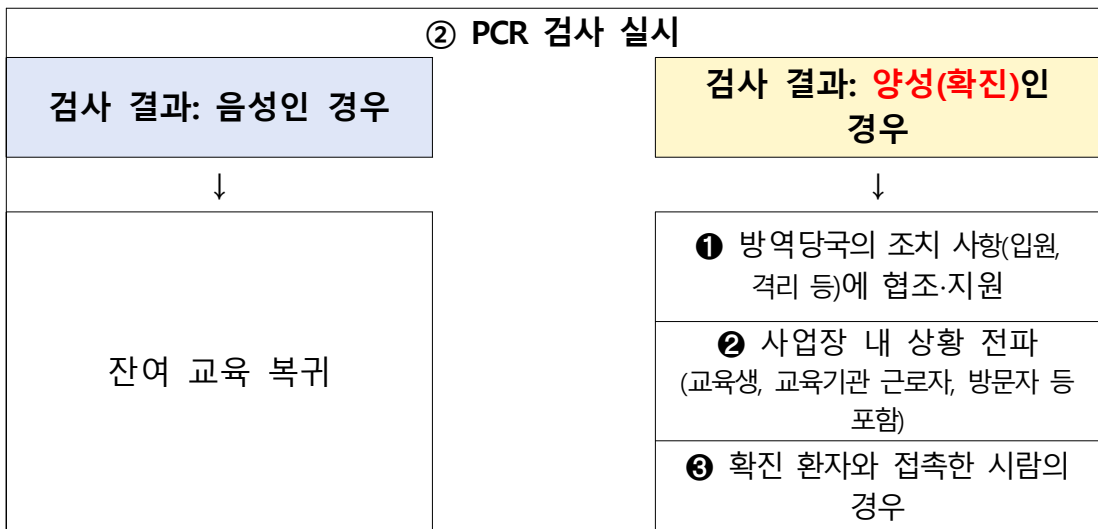
교육 복귀(상황 종료)



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

**[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**

\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
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# □ 코로나19 검사 포스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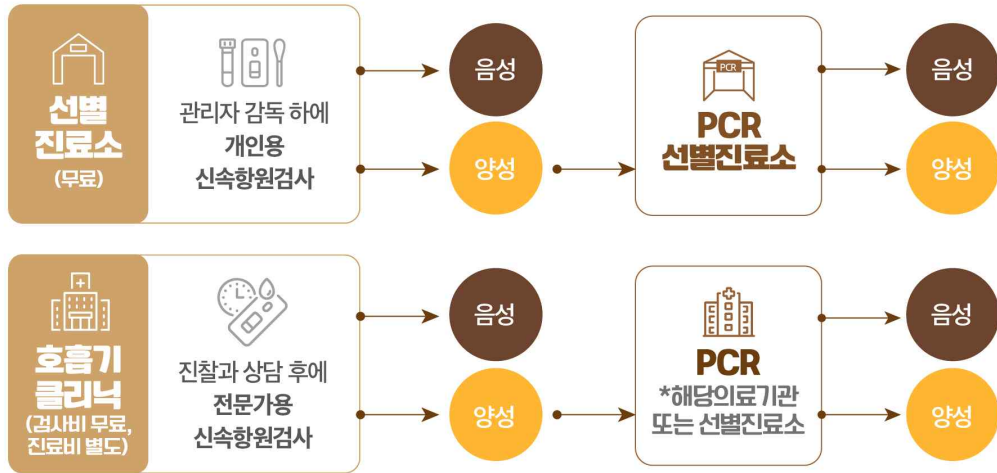


## 코로나19 검사, 이렇게 해주세요!

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.



### 일반군



### 고위험군

!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!



**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·검사를 시작으로 대응 역량 강화!**  
의료기관에서 '진단-치료-관리'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.

\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보는 [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.mohw.go.kr](http://ncov.mohw.go.kr) 에서 확인하세요!

발행일 : 2022. 1. 28.

## □ 일반국민 행동수칙

질병관리청 2020.11.19

##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

인플루엔자 예방

- ①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**반드시 마스크 착용**하기  
\*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약국,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를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**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**
- ② 흐르는 물에 **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** 씻기
- ③ 환기가 안되고 **많은 사람이 가까이** 모이는 장소는 **방문 자제**하기
- ④ 사람과 사람 사이, **두 팔 간격 2m(최소 1m)** 거리두기
- ⑤ 씻지 않은 손으로 **눈·코·입 만지지** 않기
- ⑥ **기침이나 재채기할 때** 옷소매나 휴지로 **입과 코를 가리**기
- ⑦ 매일 주기적으로 **환기**하고 자주 만지는 **표면은 청소·소독**하기
- ⑧ **발열, 호흡기 증상**(기침이나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사람과 **접촉 피**하기
- ⑨ 매일 본인의 **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**하기  
\*다양한 주요 증상 : 발열(37.5°C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 등)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 등
- ⑩ **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**하기

## □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 코로나19·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## 일반수칙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 방문 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### 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  
\* 특히 고위험군(영유아, 고령자, 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·식기류·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·소독하기

###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###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,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, 등교,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

# 마스크 착용!



##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★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 
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### “ 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 ”

실내

▪ 상시 마스크 착용

실외

▪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 
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
▪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

### 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  
마스크 착용법

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 
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 
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  
마스크의 종류

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 
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
✓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 
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